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 및 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提　　案　　說　　明

1992. 3.

大　田　直　轄　市　長

大田直轄市 消防本部長 李 學 起 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議員 여러분

民主主義를 實現하는 出發點이라고 할 수 있는 地方議會가 構成되어 連日 바쁘신 議政活動중에도 당 本部에서 提出한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 條例中改正條例 및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 審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感謝드립니다.

그러면 이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改正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消防業務가 廣域消防行政體制로 改編됨에 따라 內務部로부터 全 市·道에 義勇消防隊設置條例準則 및 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準則이 示達되어 이에 符合되도록 義勇消防隊運營體制 및 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體制를 整備하고 義勇消防隊 運營의 活性化 및 義勇消防隊員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制度的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案 第3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義勇消防隊 支隊 名稱에 있어 ○ ○支隊를 ○ ○地域 義勇消防隊로 變更하였으며,

案 第4條에서 義勇消防隊의 官署標識 및 懸板規定을 現行 行政指示로 運營되던것을 標識와 懸板의 規格 및 制式 規定을 新設하였으며,

案 第 5條 隊員의 任用에 있어서는 管轄區域內에 居住하는 者중 志願하는 者로 規定되어 있던 것을 管轄區域內 居住하는 者중 自願하는 住民으로 管轄區域內에서 安定된 職業을 가진 住民, 健康狀態가 良好하고 協同心이 强한 住民, 信望이 두터우며 義勇奉公 情神이 强한 住民으로 任用規定을 强化 함으로써 義勇消防隊員의 資質向上을 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案 第 10條에서 보시면 義勇消防隊員의 任用權者에 있어서 隊長, 婦女隊長, 副隊長, 支隊長은 消防署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任用하고 隊員은 隊長의 推薦에 의하여 消防署長을 經由 市長이 任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隊長, 副隊長 婦女隊長,婦女隊副隊長,地域隊長은 從前과 같이 消防署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任用하고 隊員은 隊長의 推薦에 의하여 消防署長이 任用토록 하였으며,

案 第 20條에서는 義勇消防隊의 檢問을 年 1回에서 年 2回로 檢問規定을 强化하여 任務 遂行 能力 向上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案 第 23條에서는 義勇消防隊員이 消防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出動 또는 動員된 경우에는 手當을 1人1回에 消防公務員 報酬規程에 規定된 地方消防士 1號俸俸給月額을 30으로 나눈 金額의 68%를 支給 하던 것을 70%로 引上 하여 義勇消防隊員의 士氣를 振作 시키고자 합니다.

案 第 24條를 보시면 義勇消防隊 活動費 補助 規定을 新設하여 義勇消防隊와 직접 關聯있는 業務를 遂行할 경우에는 그 經費(旅費등)를 消防署長이 支援할 수 있도록 하고 區 行政에 必要하고 有益한 地域 活動을 遂行하였을 때에는 그 活動에 必要한 經費는 區廳長이 支援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案 第 30條 에서는 義勇消防隊員의 災害補償金을 市長에게 請求하고 支給받던 것 을 隊長 經由 消防署長에게 請求하고 支給 받도록 하였으며,

案 第 31條 에서는 義勇消防隊 相互間 消防業務 情報交換, 隊員의 福祉向上과 親睦圖謀等 地域消防行政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여 義勇消防隊 聯合會를 構成할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 하였으며,

案 第 33條에서는 聯合會 활동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市에서 그 所要 經費를 支援할 수 있도록 하고 聯合會가 區 行政에 必要하고 有益한 地域活動을 遂行 하였을 때에는 그 所要經費는 區에서 支援할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 하였습니다.

案 第 34條에서는 管轄區域內 業務支援 規定을 新設하여 區에서 義勇消防隊 支援 要請이 있을 시는 消防署長(義勇消防隊長)은 積極 參與 支援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案 第 27條의 別紙 第 9號에서 義勇消防隊員이 消防業務로 인하여 身體障碍 發生時 障碍等級別 補償金을 各 等級別로 地方消防士 4號俸 俸給年額을 基準으로 支給하던 것을 地方消防士 5號俸 俸給年額을 基準으로 支給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案 第 3條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奬學生을 消防署長이 市長에게 推薦하던 것을 隊長이 消防署長에게 推薦토록 推薦權者를 調整하였고 推薦 範圍는 奬學生數 (15名)의 2倍數 範圍內에서 推薦 하던 것을 義消隊 1個隊當 2名 範圍內로 調整 하였으며,

案 第 4條에서 奬學生 選拔權者를 市長에서 消防署長으로 調整하고 消防署長은 選拔 結果를 市長에게 報告하는 規定을 新設 하였습니다.

다음 案 第 5條를 보시면 奬學生의 定員을 消防署當 15名(大學生 3名, 中·高等學生 12名)에서 義勇消防隊員 및 婦女義勇消防隊員의 全體數에 따라 差等 調整하여 60-110名에 奬學生數를 10名으로 하고 隊員 20名當 1名씩을 增員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添附된 別紙를 보시면 상세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案 第 9條에서는 奬學生이 學業에 精進하고 品行이 他의 模範이 되도록 하는 奬學生 指導,管理權者를 市長에서 消防署長으로 調整 하였습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內容은 配付 해 드린 油印物 을 參考해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는 當 本部에서 提案한 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感 謝 합 니 다.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100

提出年月日 : 1992. 3. 27
提 出 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消防業務가 廣域消防行政體制로 轉換됨에 따라 義勇消防隊運營體制를 整備하는 한편 義勇消防隊 運營의 活性化 및 士氣振作을 爲하여 制度的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義勇消防隊 支隊 名稱을 從前에는 ○○消防署義勇消防隊 第 ○○支隊로 하던 것을 ○○消防署義勇消防隊 ○○地域義勇消防隊로 變更하였음.
(案 第 3條)

나. 義勇消防隊 官署標識 및 懸板 規定을 現行 行政 指示로 運營 되던 것을 標識와 懸板의 規格 및 制式 規定을 新設 하였음. (案 第 4條)

다. 義勇消防隊員의 任用에 있어 從前에는 管轄區域內에 居住하는 者중 志願하는 者로 規定 하던 것을 管轄區域內 居住 하는 者중 自願하는 住民으로 管轄區域內에서 安定된 職業을 가진 住民, 健康狀態가 良好하고 協同心이 强한 住民, 信望이 두터우며 義勇奉公 情神이 强한 住民으로 任用 規定을 强化함으로써 義勇消防隊員의 資質向上을 기하도록 하였음. (案 第 5條)

라. 義勇消防隊員의 任用權者에 있어서 隊長, 婦女隊長, 副隊長, 支隊長은 消防署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任用하고 隊員은 隊長의 推薦에 의하여 消防署長을 經由 市長이 任用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隊長, 副隊長, 婦女隊長, 婦女隊副隊長 地域隊長은 消防署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任用하고 隊員은 隊長의 推薦에 의하여 消防署長이 任用토록 하였음. (案 第 10條)

마. 義勇消防隊 檢問을 年 1回에서 年 2回로 强化하여 任務 遂行 能力을 向上시키고자 함. (案 第 20條)

바. 義勇消防隊員이 消防業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出動 또는 動員된 경우에는 手當을 1人1回에 消防公務員 報酬 規程에 規定된 地方消防士 1號俸 俸給月額을 30으로 나눈 金額의 68%를 支給 하던 것을 70%로 引上 支給토록 함으로써 義勇消防隊員의 士氣를 振作시키고자 함. (案 第 23條)

사. 義勇消防隊 活動費 補助 規定을 新設하여 義勇消防隊 關聯 業務 遂行을 위한 必要 經費는 消防署長이 補助할 수 있도록 하고 區 行政等 地域 活動 遂行에 必要한 經費는 區廳長이 支援할 수 있도록하여 義勇消防隊 運營의 活性化를 기하도록 하였음. (案 第 24條)

아. 市長에게 請求하고 支給받던 義勇消防隊員의 災害補償金을 隊長 經由 消防署長에게 請求 및 支給 받도록 하였음. (案 第 30條)

자. 義勇消防隊 相互間의 消防業務 情報交換, 隊員의 福祉向上과 親睦圖謀等 地域消防行政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여 義勇消防隊 聯合會를 構成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 하였음. (案 第 31條)

차. 聯合會의 活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그 所要經費는 市에서, 聯合會가 區 行政에 必要하고 有益한 地域活動을 遂行 하였을 때에는 그 所要經費를 區에서 支援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 하였음. (案 第 33條)

카. 管轄區域內 業務 支援 規定을 新設하여 區에서 義勇消防隊 支援 要請이 있을시는 消防署長(義勇消防隊長)은 積極 參與 支援토록 하였음.
(案 第 34條)

타. 義勇消防隊員이 消防業務로 인하여 身體障碍 發生時 障碍 等級別 補償金을 各 等級別로 地方消防士 4號俸 俸給年額을 基準으로 支給 하던 것을 地方消防士 5號俸 俸給年額을 基準으로 支給토록 하였음. (案 別紙 第 9號 身體障碍等級別障碍補償表)

3. 參考事項

가. 改正根據 : 內務部 義勇消防隊設置條例準則 : 방호02413-12170('91.12.18)

나. 豫算協議 : 豫算部署 協議

다. 其　　他 : 該當없음